

제301회 정례회
환경수자원위원회

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(의안번호 제2325호)



2021. 6. 21.

서울특별시의회
봉양순 의원(더불어민주당, 노원3)

-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봉 양 순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동 조례안은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도물을 마시는 학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일괄적으로 위임관리를 함에 따라 음수대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음수대 위탁관리 전면 시행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철회 및 제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, 음수대 무단 철거 또는 정수기 사용에 따른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